

#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18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3. 12. 6.

제출자 : 달성군수



## 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·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따른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, 현행 자치법규 입법 절차를 정비하여 법제사무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정으로 관련 규정 소관이 지방의회로 이관됨에 따라, 주민의 조례 제정·개정 또는 폐지 청구 사항 조문 정비(안 제1조, 제9조제4항, 제12조제3항, 제13조)
- 나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반영(안 제9조제1항, 제14조, 제16조)

## 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(1) 「지방자치법」 제32조제6항, 제78조
  - (2)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조, 제2조, 제13조
  - (3)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」 제1조, 제2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

다. 기타

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- (2) 입법예고(2023. 10. 27. ~ 11. 16.) 결과 : 의견 없음
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사항과 주민의 조례 제정 또는 폐기 청구에 필요한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”을 “사항을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3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78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4장(제13조)을 삭제한다.

제14조제2항 후단 중 “지방의회”를 “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26조제6항”을 각각 “「지방자치법」 제32조제6항”으로, “지방의회”를 각각 “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”로 한다.

제15조를 삭제한다.

제16조 단서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26조제6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32조제6항”으로 하고, “지방의회”를 “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<u>사항과 주민의 조례 제정 또는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주민 권익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</u></p> <p>제9조(작성대상) (생략)</p> <p>① 군수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3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④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청구인은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조례안에 첨부할 수 있다.</p> <p>4. ~ 10. (생략)</p> <p>제12조(사전협의)① ~② (생략)</p> <p>③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소관 부서에서는 제9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사항을----- ----- -----.</p> <p>제9조(작성대상) (현행과 같음)</p> <p>①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78조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4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2조(사전협의)① 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 제&gt;</p>

여 조례·규칙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.

제4장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

연서 주민수

제13조(생략)

제14조(자치법규의 공포 절차)

① (생략)

② 자치법규의 공포문 전문에는 입법의 뜻을 적어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.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「지방자치법」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,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.

제15조(예산 등) 「지방자치법」 제1

33조제2항에 따른 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.

제16조(공포방법 등) 자치법규 등은 군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지방자치법」 제26조

<삭 제>

<삭 제>

제14조(자치법규의 공포 절차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 . -----  
-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-----  
----- .

③ 「지방자치법」 제32조제6항 -----  
-----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-----  
-----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32조제6항-----  
-,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-----  
----- .

<삭 제>

제16조(공포방법 등) -----  
-----  
-- . ---, 「지방자치법」 제32조

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 
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  
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  
다.

제6항----- 대구광역시 달성군  
의회-----  
-----  
---

## □ 지방자치법

### 제32조(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)

-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.
- ⑦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- 제78조(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 □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

**제1조(목적)** 이 법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9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·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주민조례청구권자)**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. 이하 “청구권자”라 한다)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(이하 “지방의회”라 한다)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(이하 “주민조례청구”라 한다)할 수 있다.

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2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에 따른 영주(永住)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

**제13조(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)** ① 지방의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

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-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의 취지(대표자와의 질의·답변을 포함한다)를 들을 수 있다.
- ③ 「지방자치법」 제7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
## □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)**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는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권자(이하 “청구권자”라 한다)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(이하 “주민조례청구”라 한다)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·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